

물품의 정리기준(제37조 관련)

구분	구분 명세
구입	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수령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편입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국유재산 편입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부생(復生)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관리전환	관리전환을 통해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납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분류 전환	분류 전환으로 정리하는 경우
기증	기증을 받거나 기증을 하는 경우
출급	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해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여	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여	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각	매각하는 경우
해체	해체하는 경우
폐기	폐기하는 경우
망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 감모	자연 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급(官給)	관급하는 경우
사용전환	사용 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격평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기타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정리